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76
----------	-------

발의연월일 : 2025. 9. 30.

발 의 자 : 조지연·김기현·김승수
윤상현·김정재·김예지
김위상·박수민·김형동
김상훈·신동욱·김성원
임이자·박수영·김소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 또는 인구 특성,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그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피해 보상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제47조, 제70조제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중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제3호 중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를 “기후위기 취약계층에”로, “지원”을 “및 피해보상 지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기후위기 취약계층”이란 <u>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 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u>
3. ~ 17. (생 략)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정부는 <u>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등의</u> 현황과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역 및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과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 략) <u><신 설></u>	3. ~ 17. (현행과 같음) 제47조(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 ① ----- <u>기후위기 취약계층의</u>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u>

제70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2. (생략)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u>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창출 지원</u> 4. ~ 11. (생략)	<u>후위기 취약계층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재해 또는 이에 수반되는 피해에 대비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후 관련 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고 보급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u> 제70조(기금의 용도) ----- ----- -----. 1. · 2. (현행과 같음) 3.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및 피해보상 지원 4. ~ 11. (현행과 같음)
--	---